

#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(안)

서울특별시 도봉구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4. 2. 23.

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위원장

## 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

임용분야	임용등급	채용인원	직무내용	근무기간 (주당근무시간)	근무예정 부 서
건강증진실 근무인력	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	1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건소 건강증진실 업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, 체성분 검사</li> <li>- 건강증진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비만예방·신체활동, 걷기 사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찾아가는 운동 프로그램 운영 등</li> </ul>	최초임용일로 부터 1년 (주당 35시간)	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실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

※ 담당업무는 사용주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 2.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, 제27조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, 제21조의3, 제21조의4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
-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

## 3. 응시 자격 요건

- 공통 응시자격 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 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및 「병역법」 제76조(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)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  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  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- 지역·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)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6. 12. 31. 이전 출생자)

○ 직무분야 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임용등급	분야	응시자격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등	비고
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'라' 급	건강증진실 근무인력	-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<건강운동관리사 인정조건>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발급된 자격증 소지자	- 직무분야 실무경력 :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병원, 민간기관에서 운동처방/ 신체활동 장려/건강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

-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
- ※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,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
- ※ 자격요건은 공통요건 및 응시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
## 4. 근무 및 보수 수준

- 근무조건 : 주당 35시간(주5일, 1일 7시간 근무)
- 보수수준
  -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 ‘라’ 급 연봉 한계액(상한액: 50,967천원, 하한액: 36,358천원)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·자격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
  - 연봉 외 급여 :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지급
  - 보험가입 : 공무원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(선택)
    - ※ 공무원연금법(2018.9.21.자 시행) 적용,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 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### ○ 시험일정

채용공고	원서접수	1차 서류전형	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	2차 면접시험 (일시 및 장소)	면접시험 합격자발표
2024.2.23.(금) ~ 3.4.(월)	2024.2.28.(수) ~ 3.4.(월)	2024.3.5.(화) 14:00, 보건소 2층 회의실	2024.3.6.(수)	2024.3.11.(월) 16:00 도봉구보건소 지하1층 교양강좌실	2024.3.12.(화)

- 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, 변경공고 실시 예정이며,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.
- ※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때에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사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

### 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4. 2. 28.(수) ~ 3. 4.(월)
- 접수시간 : 근무시간 09:00~18:00, 점심시간 제외(12:00~13:00)
  - ※ 토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
- 접 수 처 : 도봉구보건소 6층 보건정책과 건강도시팀 ☎ 02-2091-4423
- 접수방법 :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[담당자 이메일(소문자) : minimoon@dobong.go.kr]
  - ※ 이메일 접수 시 수입증지 부착 또는 보험통상 및 우편환으로 해당금액(5,000원) 송부 (보험통상 또는 우편환 송부시 원서접수 마감일(2024.3.4.)소인까지 인정하며 응시원서에 해당 사항 기재)

👁️ 수입증지 소인(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 또는 도봉구보건소 3층 민원실) 후 응시원서 접수(도봉구보건소 6층 보건정책과) 하시기 바랍니다.

- 제출서류 : 1. 응시원서 ~ 7.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사용
-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-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

○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

1. 1차 시험(서류전형) : 개별통보 및 도봉구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
2. 2차 시험(면접시험) :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도봉구 홈페이지 공고

-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, 다음의 5개 평정 요소별로 각각 상(20~16점), 중(15~11점), 하(10점 이하) 평정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순위 결정

1.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	2.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3.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	4.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5.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	

3. 2차(면접시험)합격자 발표 : 개별 통보 및 도봉구 홈페이지 공고

-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
-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로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※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‘하’로 평정하였거나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‘하’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

## 6. 제출서류

1. 응시원서(별지1호 서식) 1부

- 수입증지 : 5,000원(도봉구보건소 3층 민원실 또는 도봉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소인)

2. 이력서(별지2호 서식) 1부

-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

3. 자기소개서(별지3호 서식) 1부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4호 서식) 1부

4.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(별지5호 서식) 1부

5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별지6호 서식) 1부

6. 직무수행계획서(별지7호 서식) 1부

7. 최종학교 졸업(학위)증명서 1부

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
## 8.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
-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
- 해당기관(회사)의 관인(법인 인장)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
- 근무 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필요시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

## 9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도록 발급) 1부

-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

## 10.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부

## 11. 기타 이력서 기재 내용 관련 증빙자료(해당자에 한함)
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※ 제출서류 중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,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
- 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※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도 가능하나, 최종합격자 등록 시 증빙서류 원본 지참

## 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13조의2의 임용 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 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,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,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 결격사유,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.

- 응시수수료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합니다.
  -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
  -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
  -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
-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르며, 공고문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시 도봉구의 해석에 따릅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도시팀(☎ 02-2091-4442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